

의안번호	제 45 호
의 결 년 월 일	1998년 11 월 26일 (제 79 회)

의 결 사 항
원안가결

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출 년 월 일	1998. 11. 24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

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1. 24.
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
1. 제안이유 : 복지회관 증설로 별지란에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려는 것 임.

2. 주요골자

○ 읍면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개정



- 내속리면 복지회관 :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 10, 295

- 삼 승 면 복지회관 :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91-1, 192-5

3. 근거법령 : 없음

4. 사전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첨부 :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정조례(안)

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별표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현행)

(별표)

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

번호	회 관 명	위 치	비 고
1	마로면 복지회관	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61-2	

(개정)



(별표)

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

번호	회 관 명	위 치	비 고
1	내속리면 복지회관	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 10, 295	
2	마로면 복지회관	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61-2	
3	삼승면 복지회관	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191-1, 192-5	